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(7급 9명)의 직급을 환원(8급 4명, 9급 5명)하고, 정원 5명(8급 5명)의 직급을 상향조정(6급 4명, 7급 1명)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표 5의2 중 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“271”을 “275”로 하고, 행정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“413”을 “405”로 하며, 행정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“488”을 “487”로 하고, 행정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“116”을 “121”로 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87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“20명(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및 행정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)”을 “13명(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)”으로 하고 “행정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명, 행정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5명”을 “행정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명 행정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(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, 행정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)은 2025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며, 2025년 0월 0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행정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명으로 본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의2]

지방통계청 ·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	· ·	· ·	
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	<u>271</u>	<u>275</u>	+4
행정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 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	<u>413</u>	<u>405</u>	-8
행정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농업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	<u>488</u>	<u>487</u>	-1
행정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 서기보 ·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	<u>116</u>	<u>121</u>	+5
· ·	· ·	· ·	